

[] 공공하수도 [] 500m³/일 미만
(하수관로 제외) [] 10,000m³/일 미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[] 등록(변경)신청서
[] 하수관로 [] 10,000m³/일 이상 [] 변경신고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0일
신청 (신고)인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	
	주소	(전화번호:)		
신청 (신고)내용	사무실 소재지	(전화번호:)		
	실험실 소재지	(전화번호:)		
	등록/변경내용 (관리대행범위)			

「하수도법」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, 제13조의3제2항 또는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(변경)을 신청 또는 변경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신고인)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신청(신고)인 제출서류	1. 등록신청의 경우: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별표 1의2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변경등록 신청(변경신고)의 경우: 등록증(신고증)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1. 신청(신고)을 하여야 하는 대상
 -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으로 등록(변경)신청 및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
2. 등록(신고)한 사항 중 변경등록(신고)을 하여야 하는 사항
 - 가. 상호·명칭의 변경
 - 나.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
 - 다.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
 - 라.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